

2025년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기업 모집 공고

세종특별자치시는 차별없고 행복한 근로환경 조성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우수기업을 발굴·지원하고자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도 인증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 하오니 관내 우수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5년 6월 2일

세종특별자치시장

1. 「세종형 행복일터」 정의

- ①고용평등 실천과 ②고용차별 개선으로 '공정' 가치를 확립하고 근로자의 '행복한' 근로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질 측면에서 우수한 기업

- ① 정규직 채용원칙 확립으로 정규직 비율이 높고, 노동자간 차별이 없는 기업
- ② 고용 형태 전환, 각 영역(성별·연령 등) 차별 개선을 추진한 기업

2. 추진목표

-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고용차별 개선 등 행복한 일터 조성을 선도한 기업을 선정·지원하여 상생하는 기업·근로문화 및 모범사례 확산
- 선정규모 : 3개 기업

3. 공모 및 신청

- (공 고 명) 2025년 세종형 행복일터 인증기업 모집 공고
- (공고방법) 市 누리집 게재, 보도자료 제공 등
- (공고 및 신청기간) 2025. 6. 2(월) ~ 7. 1(화)

※ 신청은 '25. 7. 1(화) 18:00까지 유효, 서류제출 후 접수완료 여부 확인 필수

- (신청자격) 본사(또는 주공장)가 市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근직 5인 이상 모든 사업장(공고일 기준)

〈 결격(제외) 사유 〉

- 행복(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기간(3년)이 만료되지 않은 기업(공고일 기준)
- 최근 2년 이내에 불법 노사분규가 발생한 사업장(공고일 기준)
-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업장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공고일 기준)
- 최근 2년 이내 중대재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된 사업장(사업주)
-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사업장(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

- (신청방법) 세종시청 누리집에서 첨부 양식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신청 기간 내 증빙서류 등과 함께 **이메일(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sejong@sjnosaminjung.or.kr) 제출**

- (제출서류)

번호	구비서류	양식	작성방법
1	선정 신청서	붙임 1	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
2	행복일터 조성 추진실적	붙임 2	한글파일(HWP)로 제출(A4 10페이지 이내)
3	추진실적 증빙자료	-	한글파일(HWP) 또는 PDF 파일 스캔본 제출
4	개인(기업)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 3	온라인 작성 및 서명된 스캔본 제출
5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발급 후 스캔본 제출
6	사업자등록증	-	사본 제출
7	사업자등록증명	-	국세청 홈택스, 정부24 발급 후 스캔본 제출
8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	총 4부 ('23년말/'24.6월말/'24년말/'25.5월말) ※ 발급 웹사이트 주소 : total.comwel.or.kr/

※ 모든 서류는 공고일('25.6.2) 이후 발급분에 한함(6. 사업자등록증 제외)

4. 심사 및 선정

- (심사방법)



- **(1차, 서면심사)** 4개 분야에서 정량·정성지표로 평가하고, 80점 이상 획득한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2차 심사대상 6개 기업을 선정

- (2차, PT심사) 6개 기업 PT발표(10~15분, 자유형식) 및 질의응답 등을 통한 평가 항목별 작성내용·증빙자료의 일치 여부 확인
- (최종선정) 1차 서면심사 및 2차 PT심사 결과에 따라 우수 3개 기업 행복일터 최종 선정,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 보조사업자 선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제출서류: 선정기업 대상 추후 안내

○ (심사기준) 4개 분야, 12개 세부지표 / 110점(정량 40, 정성 70)

평가분야	평가항목	배점
I. 행복일터 실천의지	• 일터 내 '공정'가치 확립 의지와 노력 <정성, 10점>	20점
	•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 노력 <정성, 5점>	
	• 선정 시 노사상생 지원금 활용 계획 <정성, 5점>	
II. 행복일터 이행 및 성과	1. 고용평등 실천(35점)	60점
	• 정규직 채용 원칙 확립(정규직 비율) <정량, 15점>	
	• 각 영역에서 노동자간 차별 없는 처우 보장·지원 <정성, 20점>	
	2. 고용차별 개선(25점)	
	• 기간제, 단시간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 <정량, 15점>	
• 각 영역에서 노동자 간 차별 및 처우 개선 <정성, 10점> - 고용형태별, 성별, 연령별, 학력, 장애 등		
III. 사회적 책임 이행	• 고용안정 노력(일자리 유지, 나누기 등) <정성, 5점>	20점
	• 상생협력 노력(원·하청 간 등) <정성, 5점>	
	• 사회적 취약계층 채용 여부 <정량, 5점>	
	• 관내 청년 채용 여부 <정량, 5점>	
IV. 노사협력, 조직간 소통문화	• 노사협력 및 조직 간 소통문화 실행 사례 <정성, 10점>	(가점) 10점
총 점		100점 (+10)

○ (인증기간) 3년 ※ 「市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제3항

5. 선정 취소

- (선정취소)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것이 판명된 경우나 선정 이전 또는 이후에 노동관계법 등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선정취소
- 행복일터 선정취소가 결정된 날로부터 최대 5년간 신청자격 박탈, 보조금 회수, 인증서 및 인증현판 회수 등 행복일터 인센티브 지원 제한

6. 선정기업 지원

재정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상생지원금 : 기업당 사업비 7,200천원+자부담 800천원 - 노사상생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의 용도로 지원금 사용 <p style="text-align: center;">< 지원대상 비용 (예시) ></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육, 행사, 워크숍, 간담회 운영 등에 소요되는 비용 ② 홍보물 제작 및 보급에 소요되는 비용 ③ 책자, 팸플릿 등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④ 기타 사업 수행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div> <p>※ 노사상생·화합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자본형성적 경비(시설비 등) 및 운영경비(사무실 임대료, 상근직원 인건비 등) 등은 제외</p>
기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종시 기업인의 날 인증서, 인증현판 수여(인증기간 3년) · 선정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 사례집 제작·배포 ·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방중소기업지원자금 지원 대상

7. 선정기업 시상

-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인의 날 행사 시, 인증서·현판 전수('25.12월)

8. 추진일정



※ 세부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선정기업에 한해 설명회 예정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및 실적보고서 작성법 개별 안내)

9. 기타사항

-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 책임, 제출된 서류는 미반환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서 자료 및 참석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

- 지방보조금 집행 시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내역은 지방보조금시스템(보택e)에 등록·사용을 의무화 하여야 함
- 당해 공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준함
-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08호) 등 관련규정이나 지침에 따르며, 그 밖의 사항은 소관 사업 부서에서 결정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단체는 지방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기타 자세한 사항 문의: 세종시청 기업지원과(☎300-4853),
세종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862-8536)